

상조회 규정

[2019. 3. 25. 제정]

[2022. 3. 25. 개정]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회는 영덕군청공무원노동조합 상조회(이하‘상조회’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상조회는 길흉사시 조합원 상호간의 나눔과 정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조합원의 후생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군민에 대한 참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나아가 영덕군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회 원

제3조(회원의 자격) 본 회의 회원은 영덕군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조합원 및 명예조합원으로 한다.

제4조(자격상실) 영덕군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9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

제 3 장 임 원

제5조(임원의 구성) 상조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.

1. 위 원 장 1명
2. 부위원장 1명
3. 사무국장 1명

4. 조직부장 1명

제6조(당연직 임원과 직무)

1.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되며 본회의 운영과 사무를 관장한다.
2. 부위원장은 노동조합의 부위원장 중 1명을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을 보조하고 유고 시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.
3. 사무국장은 여신업무를, 조직부장은 경조사 실무를 관장한다.

제 4 장 재 정

제7조(재정 및 회비) ① 상조회의 재정은 조합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.

② 기타 수익금을 위하여 별도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③ 수익사업을 관리하는 자에게 관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.

제8조(재정관리)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합 규약에 따른다.

제9조(회계연도) 상조회 회계연도는 조합 재무회계 규정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 5 장 운 영

제10조(대상사업) ① 상조회는 조합원 경조사에 대한 지원을 대상사업으로 하며, 기타 필요한 사업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조합원(준조합원) 및 명예조합원 경조사의 범위 및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본인결혼 및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: 본인결혼 20만원, 출산 20만원

(조합원 각각 지급)

2. 본인 및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사망 : 상조기와 조화는 공통지원으로 하며, 10만원 상당의 상조물품(1회용 장례용품) 및 20만원 상당의 장례도우미(2명/1인당 각10시간)와 조의금중 조합원 또는 명예조합원이 선택할 수 있다. 단, 가족(부부 및 형제)조합원은 모두 지원금을 지급하며 조화는 1개만 지원한다.
 3.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시 50만원의 조의금을 별도로 지급한다.
 4. 퇴직 : 위로금 50만원, 감사패 및 꽃다발
 5. 본인 7일 이상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입원환자 : 위로금 20만원
 6. 기타 지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.
- ② 조합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동호회로서 회원이 30명 이상이거나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동호회에 대해서는 10만원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. 단 년1회에 한하며, 비조합원이 포함된 동호회는 제외한다.

제11조(기타 지원과 지원금의 신청) 긴급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조합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지원범위를 결정할 수 있고 경조사시 별도의 신청 없이 회람으로 갈음하여 지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) 본 규정은 2022.5.1.부터 시행 한다.